

목 차

'23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제작지원 수행지침

2023. 2.

I.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및 내용	1
II. 제작지원 조건	5
III. 신청절차 및 방법	8
IV. 심사 및 평가	9
V.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1
VI. 제작비 집행 및 제작지침	13
VII. 중간보고 및 중도금·잔금신청	22
VIII. 결과보고	23
IX.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4

I.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개요

□ 지원목적

-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간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 추진

<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 체결 현황, '23. 2월 기준 >

구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발효	'06.9월	'09.5월	'09.10월	'11.7월	'14.12월	'15.9월	'15.12월	'19.8월	'21.1월

* EFTA(4개)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EU(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영국

□ 지원대상

-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모든 사업자
 -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제작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작사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상기 사업자로 한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

-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 사업자 최종선정 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 지원장르

- 제한 없음

□ 공동제작 유형

유형	내용	참여방식
선판매 (Pre-sales)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영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선투자 개념의 참여	자본
공동출자 (Co-financing)	자본을 출자한 후, 제작 내용 검토에는 참여하지만 제작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	자본
교환형 (Swapping Twinning)	하나의 시리즈를 공동제작사가 나누어 재정적인 제휴 관계와 동시에 제작한 다음 교환하는 방식	자본+제작
공동작업형 (Co-operation)	공동제작자가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촬영, 편집 등 전반적인 과정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식	자본+제작

2. 지원 공통사항

- 협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국내와 상대국 방송 채널을 통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및 송출이 필수임

※ 송출기간 내 채널 송출이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 내용(참고1)에 따른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외 방송사와의 협약 체결일 환율로 적용

<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

구 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방송 프로그램	20%이상	20%이상	10%이상	30%이상	20%이상	30%이상	30%이상(한) 20%이상(뉴)	10%이상	30%이상
애니 메이션	20%이상	20%이상	10%이상	35%이상	20%이상	30%이상	30%이상(한) 20%이상(뉴)	10%이상	30%이상

- 발표 평가 이후 선정된 방송사에서는 선정일 이후 2주 내 협정국 공동 제작 사업자 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참고 2 참조)이 적시된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추후 기여비율에 따른 현금 금액 입금 확인서류를 4주 내 제출을 해야함

- 협정국 공동제작 사업자의 제작비(해외제작비)는 협정국 소재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을 허용하며, 현금 금액 입금 지연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기간 연장 가능
- o 총제작비에 자부담금을 포함할 의무는 없으나, 자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 제작지원비는 1백만 원 단위로 하여 적정하게 산정하고, 과다 산정한 방송사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o 제작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정가능하며, 사정된 금액으로 제작지원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작지원 신청 방송사가 사정된 지원 금액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o 기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사업자 또는 프로그램은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타 기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직접 지원받는 프로그램

3. 운영 절차

사업 공고 및 심사	'23. 2월	'23. 3월 ~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지원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면접 심사 평가 · 협약(RAPA↔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23. 4월 ~ 12월	'23. 12월 ~ '24.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프로그램 제작 · 회계정산 교육 · 중간 보고 및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결과물 보고 및 평가 · 제작비 정산
방송 송출		'25. 4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방송 송출

4. 제작비 지급 : 3회 구분 지급

지급비율	선금(30%)	중도금(50%)	잔금(20%)
지급시기	협약 체결 후	중간보고서 접수 후	현장점검 후

※ 중간보고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II. 제작지원 조건

1. 일반 조건

- 국내 방송사는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 등은 총 제작비에 반영할 수 없으나, 해외 방송사는 일부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 등 현물에 대해서는 재정적 최소 기여도의 50%까지 반영 가능
- 지원 대상 방송사는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정산보고 기간 전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함
 - 회계감사 비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총 제작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아래 예정 비용 참고하여 책정(회계법인 지정 후 확정수수료 통보 예정)

총 제작비	회계감사수수료 (변동 가능)		
	원가	부가가치세	합계
5천만원 미만	545,455	54,545	6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727,273	72,727	80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909,091	90,909	1,0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363,637	136,363	1,5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454,546	145,454	1,600,000

-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전반에 대해 위탁(외주 제작) 하는 것은 불가함
 -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PD)는 당해연도 방송사에 소속된 인원이어야 함※ 협약 및 선금 신청 시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PD)의 재직증명서 등 확인 서류 제출
 - 다만, 작가, VJ, AD, 코디, 번역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조 스태프를 외부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장비 대여 사용도 가능
 - ※ 외부 보조 스태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인력 활용 필요성, 계획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
- 공동제작 도중 일부 방송사가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경우, 한국전파진흥협회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함
※ 공동제작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제작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2.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사항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2023년도 공동제작협력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국가 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¹⁾,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부과하는 사업수행 지침 및 제작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 제작지원 대상 사업자는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유통에 있어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방송영상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작가·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를 준수해야 함

3. 방송 및 제작지원 고지

- 방송 의무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국내와 해외 각각 1회 이상 방송해야 함
- 제작지원 고지
 - 프로그램 종료 시 아래 내용을 화면 하단(중앙)에 전체화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로 표기하여 2초 이상 고지하며 협찬고지 등과 병기 금지
 - (국내)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해외) “This program is funded by the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 해당국가 언어로 재번역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유통 및 저작권 관련 준수사항

- 지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에게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영리적 사업(KTV,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 송출, 해외한국어방송사 방송권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제작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적 사업(국내외 콘텐츠마켓 참가 등 시연행사, 대외홍보 및 지자체 보급 등)에 제작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함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방송사에게 있음
 - 지원 신청 시 대본·구성안 등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확보하지 않고 합의 없이 타 제작사 또는 작가 등의 구성을 도용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추후 발견될 경우 제작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해야 함

5.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조건, 사업수행계획 등 위반 시 제재조치

-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타 관련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함
 -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동 사업의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 기존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완성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진행 상황 및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협약 또는 제작지원 사업 중도포기, 조건 위반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기 지급된 제작지원금의 반환, 일정기간 동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기타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 방송사에게 있음

III.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 제작지원 협약 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지출행위 포함) 되므로 회원가입 후 e-나라도움 접수
- ※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사업등록 절차안내는 [별첨1] 참고

2. 제출기간 : 2023. 2. 28.(화). ~ 2023. 3. 23.(목). 09:00까지

- ※ 제출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시간 엄수)

3. 제출서류

- 2023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신청서 [붙임 1]
- 공동제작 협약서(자체양식으로 하되, 필수항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함)
 - ※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간의 MOU, LOI, 딜메모, LOC, Agreement 등 계약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실질 효력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함(참고 2 참조)
- 저작권 보유 사실 및 공개 동의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4. 문의처

- 담 당 :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 지역·재난방송지원팀
(☎ 02-317-6172 / local@rapa.or.kr)

5.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선정 후 해당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IV. 심사 및 평가

1. 프로그램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안) : 프로그램 기획·제작 전문가, 유통·배급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 심사위원회 임무 :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함

2. 심사절차

○ 1차 서면평가 : 프로그램 기획안 심사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라 지원 부문별 지원예산¹⁾의 150%²⁾까지 2차 면접평가 기회 부여(단,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평균점 70점 미만 프로그램은 탈락 처리)

1) 부문별 지원신청률*이 전체 지원신청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정도를 반영하여 가감 조정한 금액 기준

* 지원신청률 = 지원신청 사업자수 / 지원대상 사업자수

2) 지원 신청액을 검토·분석하여 산정한 제작비 사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 2차 제작비 검토 :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면접평가 기획안을 대상으로 편성된 제작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액의 투명성 제고

※ 검토된 산출내역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평가 : 프로그램 기획안 제안 설명 및 문답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제작책임자 면접 평가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라 지원 부문별 지원순위를 부여하고, 지원금액 결정(단, 평균점 70점 미만 프로그램은 탈락 처리)

○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액 확정

- 3차 면접평가시, 2차 제작비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확정
- 제작지원을 신청한 방송사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제작을 포기할 경우 지원순위에 따라 후순위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3. 심사기준(안)

○ “제작기획의 우수성”, “제작계획의 적정성”, “활용계획의 가능성” 등을 평가

심사부문	평가항목	배점
제작기획의 우수성(50)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독창성 등 주제 및 내용의 적절성	30
	지원사의 전문성 및 국제공동제작 수행실적의 우수성	20
제작계획의 적정성(40)	제작일정 및 제작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20
	제작비 구성의 적절성 및 예산 사용계획의 구체성	20
활용계획의 가능성(10)	국내·외 홍보, 유통 적합성 및 향후 추가 공동제작 실현 가능성	10
총점	(5개 항목)	100

V.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 협약체결

-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방송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

가. 신청시기

지급비율	선금(30%)	중도금(50%)	잔금(20%)
신청시기	협약체결 시	중간보고서 제출 시	현장점검 후 14일 이내
지급시기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서 및 중도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현장점검 및 잔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중간 보고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협약 시 : 우편 제출(우편 제출 전 e메일로 파일 확인 후 발송)

- 협약서 2부 및 이행각서(양식 별도 공지)
- 최종 사업 신청서류(제작비 사정 시 변경된 계획 포함) 【붙임 1】
- 사용인감계 【붙임 4】
-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6】
- 사업 신청 시 접수된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PD)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작지원금 관리용 통장사본 1부
-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보증보험료는 제작비(지원금 및 자부담금)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증금액 : 정부지원금 전액, 보증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 + 60일 가산('24.3.1.)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협약당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방문)

○ 선금(30%) 신청 시 : e-나라도움 제출

- 제작지원금 신청서(선금) 1부 【붙임 3】

○ 중도금(50%) 신청 시 : e-나라도움 제출

- 중간보고서 1부 【붙임 7】
- 제작지원금 신청서(중도금) 1부 【붙임 3】

○ 잔금(20%) 신청 시 : e-나라도움 제출

- 제작지원금 신청서(잔금) 1부 【붙임 3】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우편 제출(협약시)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제출(선금, 중도금 및 잔금 신청시)

○ 우편 제출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 한국전파진흥협회 4층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 지역·재난방송지원팀(02-317-6172)

VI. 제작비 집행 및 제작 지침

1. 제작비 집행기간

- 제작지원 사업자의 지원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인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지급, 회계감사비용, 관련 인쇄비 등은 예외
※ 동 기간 이외의 사용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간주하고 전액 반납해야 함

2.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당해 제작지원금을 관리하는 통장(법인명의)을 개설하고(총 1개 통장), 해당 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e-나라도움)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3. 제작비 사용원칙 및 집행 잔액 반납

- 제작비는 직접적으로 당해 연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제작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총 제작비는 ‘**자체제작비 우선 사용 원칙**’을 기본으로 함
- 부가가치세는 제작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지원금에서 집행되었을 경우 제작지원금 계좌로 재입금되어야 함(세금계산서, 카드 집행액 동일)
※ 부가가치세는 제작지원금 관리 계좌 외의 방송사 계좌에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 과정상 용이할 수 있음
-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제작비 비목 간 30%이상 변경의 경우 한국전파진흥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정산 시 총 제작비 집행 잔액과 총 제작비 중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전액 반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를 원칙으로 함(별도 교육 예정)

※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도입하여 운영중

-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해당사업의 수행내용, 제작비 통장, 제작비 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함
- 제작비 사용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 후 지출처리 가능

4.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가. 운영비

(1) 일반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내용별 적용기준

적용기준	산정기준
인쇄비 및 유인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품관리법 제19조, 회계기준,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 및 자산성 물품 구입비 제외회의 및 행사용 물품 구입비 ※ 본 사업 이외 사용할 수 있는 경상경비는 제외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등 단기 전문가 활용비 예시) 작가, 현장진행자(FD), 음향효과비, 미술비, 코디네이터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출연료, 자문수당 등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기 기준으로 산정용역업체 및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산정출연자 및 참가자 대상 상금 및 기념품 대금은 산정 불가

적용기준	산정기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수수료(5천만원 미만 :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천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600천원) ※ 협약 후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RAPA)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회계법인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 조정 가능) ○ 물품관리비탁수수료, 송금수수료, 경쟁 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수수료는 제작비로 편성 불가

(2)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여행자 보험료 등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3)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외부장비 사용료 : 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특수장비, 녹음장비, 중계장비 등 ○ 외부시설 이용료 : 녹화 . 녹음시설, 편집시설, 컨퍼런스(전시회) 부스 등 부대 사용료 등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 비용을 산정 ○ 차량 임차는 방송용 차량 및 촬영 인력 운송하기 위한 버스 등에 한정 ※ 승용차 등을 렌탈하는 경우는 해외/도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4) 일반용역비 : 외주제작비 및 파견직원 등 제작을 위해 용역업체 및 외부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한 용역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직접 제작이 원칙이나, 일반용역비의 예산은 총 제작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 ※ 각 산정된 용역비는 목적, 대상, 사유에 대하여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금액은 효율적이고 과다하지 않게 산정 ○ 위탁사업비는 실소요 비용으로 산정하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계약내역, 견적서, 용역비 산출내역 등)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해야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에게만 산정함 ○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출장 식비는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 ○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비 지출 인정

(2) 국외여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항공료는 실소요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비 지출 인정

다.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회의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등 사업추진과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경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행사는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산정 한도 : 1인 30,000원 이내/회(다과비 포함) ○ 단순 간담회,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경비 편성 지양 ○ 출장 식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 ○ 유흥업소, 치킨상호, 호프 등 주점 및 주류 금액 사용 금지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 불가

5. 총 제작비 집행가능 항목 및 집행불가 항목

구분	제작비 집행불가 사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단,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한국전파진흥협회에 미지급금으로 신고한 경우)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변경 신고/승인 기간이 지난 후 변경한 경우 불인정 ○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해당 사업의 실제 제작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제작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증빙 서류별 인정 범위>

지출방법	내 역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사업비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수령(주로 촬영, 장비사용 등 사업자와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주로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계약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 제작결과물(검수확인서, 제작일지 등) - 원천징수영수증, 송금영수증 (원천징수세액도 집행액에 포함)
현금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영수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국내 1백만원, 국외 5백만원까지 인정(국내외 총액 6백만원까지 인정) - 건당 제한 금액 없음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일체 불인정함

6. 지출 유형별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 총 제작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제작프로그램별,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2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제작 완료 후 총 제작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지정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불인정하는 제작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제작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비목별 제출증빙자료>

비목	인정범위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용 지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50만원 이상시),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 원천징수 신고서류 : 신고 및 납부영수증 - 제작일지(작업 일자, 작업 내용 등 활용내용) 또는 제작결과물 ○ 인건비용 외 지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 제작일지(작업 일자, 작업 내용 등) 또는 제작결과물 ○ 임차료(외부장비 사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작결과물 또는 제작일지(작업 일자, 작업 내용 등)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에게만 집행 가능 - 출장계획서, 출장복명서 - 사내 여비규정에 따라 정액 지출된 경우 : 사내규정 및 이체내역 첨부 - 국외 출장의 경우 : 개인별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실비의 경우 : 금액에 맞는 영수증 첨부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지출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 회의록 등 제작관련 지출이라는 증빙이 필수이며, 회의 장소와 지출지 거리에 따라 불인정 가능 - 30만원 이상 집행한 회의비의 경우 참석자 서명 제출 - 유통업소, 주점 및 주류 사용 금액 인정 불가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 집행 불가

7. 해외에서의 제작비 사용원칙

- 해외촬영 시에도 e나라도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사례금 등을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함
- 외환 환율적용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신용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재)이며, 현금 환전(매입, 매출)은 환전하는 일자의 환율적용(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
-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출에 대한 간이 영수증 증빙을 인정하나 출장보고서,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해외 사용의 경우, 간이 영수증 사용 금액은 총액 5백만 원까지 인정함
- 가이드비, 통역비, 코디네이터비 등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 이름 및 연락처, 신분증 사본, 당사자 서명, 용역 일수 및 단가, 용역제공 내역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 및 사진을 필수 첨부하여야 함

8. 외주용역의 경우 총 제작비 집행처리 기준

- 외주 용역의 경우에도 위 총 제작비 집행지침과 동일하며, 외주용역의 경우 외주 용역사의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로 간주하여 집행 가능(단, 제작책임자 및 기획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9. 협정국 공동제작 사업자 제작비(해외제작비) 집행처리 기준

- 해외제작비 집행 증빙을 위한 신규 해외계좌 개설 필요
※ 단, 별도의 해외 계좌 신규 개설이 어려울 경우, 해당 제작비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해외 공동제작사 통장으로 증빙 대체하며 이 통장으로 제작비 집행
- 해외 제작비 제출 증빙은 통장사본, 지출관련 계약서·계산서, 인보이스(개인거래의 경우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또는 발행수표 사본 등 공적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0.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수행 중 아래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로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기존 사업수행계획서의 주제 및 기획의도에 부합하고 작품의 완성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가능
 - 가. 변경신고
 - 변경신고 신청기한 : 2023. 11. 30.(목)이내 (사업일 종료 1개월 전)
 -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고 사유를 포함한 변경신고 공문 및 변경표(양식)
 - 변경신고 사항
 - 인사이동 및 퇴사에 따른 제작책임자 변경
 - 참여인력 또는 연락담당자 변경사항
 - 제작 및 방송일자 변경(사업기간 내)
 - 사업수행 계획 및 제작과 관련된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 나. 변경승인
 - 변경승인 신청기한 : 2023. 11. 30.(목)이내 (사업일 종료 1개월 전)
 - 변경승인 방법 : 변경승인 사유를 포함한 변경승인 공문 및 변경표(양식)
 - 공문 제출 후 한국전파진흥협회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승인 사항 필요성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필요시, 소명자료 제출 및 구두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o 변경승인 사항

- 제작비 총액 대비 비목간 30%이상 변경(단, 총제작비 변경 불가)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기간 연장, 방송일자 변경(사업기간 외)
- 인사이동 및 퇴사 외 사유로 인한 제작책임자 변경
- 기타 사업수행 계획 및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 공동제작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변경 등

다. 신청방법 : 이메일(local@rapa.or.kr)을 통해 공문 및 첨부파일 제출

VII. 중간보고 및 중도금 · 잔금신청

1.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 : 2023. 6. 30(금)까지

2. 제출서류

- o 중간보고서 1부 : 【붙임 7】 양식 참조

- o 제작지원금 신청서(중도금) 1부 【붙임 3】 양식 참조

3. 제출방법 및 제출처

- o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제출

- o 담 당 :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 지역·재난방송지원팀
(☎ 02-317-6172)

4. 참고 사항

- o 중간보고 후 현장 점검 일정 추후 공지

- o 현장 점검 후 제작지원금 신청서(잔금) 1부 e-나라도움 제출

VIII. 결과보고

1. 제출 기한 : 2024. 1. 31.(수)까지

2. 제출자료

가. 결과보고서 1부 : 【붙임 8】 양식 참조

나. 제작물 및 3분 내외 트레일러(영상파일 제출)

제출영상 규격	파일타입	o MP4 또는 TS(HEVC코덱) 1식
	화면비율	o 16 : 9
	사이즈	o 1,920 x 1,080

※ 제출된 제작결과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방법 및 제출처

o 결과보고서 : 스캔날인 후 이메일(local@rapa.or.kr) 제출

o 제작물 및 트레일러 : 온라인 제출(추후안내)

4. 참고 사항

o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제작지원한 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 등 제작지원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향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또는 프로그램 선정 심사 시 감점할 수 있음

IX.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1. 제출 기한 : 2024. 1. 31.(수)까지

2. 정산방법

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정산

- o 보조사업자는 협약시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보조 사업비를 집행
- o 제작비 집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등록
- o 각 집행 건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된 증빙서류 검증을 실시
- ※ 단, 총제작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해당 증빙서류 원본을 사업종료 후 5년간 별도 보관하여야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o 보조사업자는 제작비 집행 완료('23.12.31.이내) 후 e나라도움 집행마감

나. 지정회계사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제출

- o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지정회계사가 각 집행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 o '23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 등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
- o 정산결과 확정 후 회계법인 정산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발송, 보조사업자는 정산결과 확인 및 확정
- o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제출

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e나라도움에 정산결과 등록

- o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산결과를 등록하여 정산 금액계산 실시

- 라.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 후 불인정금액·잔액·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제출
-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 반납

3.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제작비 집행 잔액, 제작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 금액

〈참고 1〉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 및 내용

〈 EU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우리나라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EU 제작자(모두 합하여)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30% 이상(애니메이션 35% 이상)이어야 함

※ EU는 2개국 이상 참여(애니메이션은 3개국 이상)하여야 하며, 1개국이 10% 이상 투자해야 함

- 기술적, 예술적 기여는 투자와 비교하여 20% 이내(애니메이션은 10% 이내)여야 하며, 총 기여의 70% 이내(애니메이션은 65% 이내)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대 20%까지 가능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이어야 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해야함

〈 ETFA 국가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창의적 기여를 하여야 함

- 제작물 및 재제작물 복사본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함

② 언어

-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함.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가능하며, 대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 작업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이와 다르게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캄보디아, EU 28개국) 및 싱가포르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싱가포르, 제3국에서 진행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싱가포르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싱가포르-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 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1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싱가포르, EU 28개국) 및 캄보디아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캄보디아, 제3국에서 진행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캄보디아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캄보디아-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 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 뉴질랜드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는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을 따라야 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또는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촬영되고 후반 제작되어야 함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된 것이어야 함

④ 언어

- 공동제작물은 한국 또는 뉴질랜드 중 어느한쪽의 공식언어 중 하나로 제작
- 공동제작자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밖의 모든 언어 또는 방언으로 된 나레이션, 더빙 또는 자막 처리는 허용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대한민국-뉴질랜드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뉴질랜드-대한민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적절한 경우, 한국, 뉴질랜드,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 호주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되거나 달리 창작 제작된 것이어야 함

④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호주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호주-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관련된 경우, 양당사국과 제3국 공동제작 국가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 인도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제 3국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인도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인도-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관련된 경우 한국, 인도, 그리고 제3국 공동제작자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명시하여야 함

< 베트남과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10% 이상이여야 하되, 기여율은 공동제작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
-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가의 배우, 기술인력, 음악 작곡가 및 그 밖의 제작 인력과 같은 개인을 참여 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의 공동제작사는 이러한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짐
- ③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디트 타이틀에 '한국-베트남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베트남-한국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여야 함

< 영국과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

-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최소 재정적 기여 비율은 30% 이상(애니메이션은 30%이상) 이여야 하고, 각 당사국 제작자(모두 합하여)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20% 포인트(애니메이션은 10%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 나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70%(애니메이션은 65%)를 초과하면 안된다.
 -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제3국의 제작자의 참여는 총제작비용(또는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의 최대 20%까지 수용
-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시청각물은 각 당사국 직접 또는 지분에 의해 소유되고 그 소유가 지속되는 기업 간이어야 하고, 공동제작 기업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 참고 2> 공동제작 계약서 단계별 필수 항목

항목	주요내용	사업단계	
		사업 신청	사업 협약
계약일(Date) 및 당사자(Par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일시 - 공동제작사 명칭,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 공동제작자 이름 등 정보 	○	○
계약의 목적(Purpo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저작권 배분 수익 배분 등 	○	○
프로그램 개요(Program Out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명, 제작편수, 형식, 총 제작비용, 재정적 기여내용 및 비용, 제작기간 등 관련 정보 	○	○
업무 분담(Roles & Responsi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사(자) 간 역할 및 과업내용 	○	○
제작비 분담 (Allocation of Production Co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자 간의 제작비 분담률 및 금액 	-	○
저작권 및 수익배분 (Copyright and Profit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자 간의 저작권 비율 - 소속국가 및 기타 지역의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비율 	-	○
제작비 회계관리 (Production cost accou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자 간의 예산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 제공 협조 	-	○
계약 기간 (Agreement Peri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 및 판매, 권리 보유 등 제반된 계약사항의 효력 기간 	-	○
제작 세부 일정 (Detailed production sched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자 간의 세부 제작 일정표 첨부 	-	별첨
제작비 세부내역 (Breakdown of production c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자 간의 제작비 분담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첨부 	-	별첨

※ 본 내용은 참고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개별 사항과 각 사업자의 내부 규정 및 표준 양식에 따라 계약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

<참고 3> 해외 제작비 현물 산정 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 협정국 공동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방송사 내부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정 기준	○ 해당인원에 대한 매월 급여 X 제작참여 개월 수
	증빙 자료	○ 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등
자체 장비 사용료	사용 용도	○ 공동제작에 활용하는 카메라, 스튜디오 등 장비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산정 기준	○ 현지국가 물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비용으로 산정
	증빙 자료	○ 인보이스, 견적서 등(직인 날인 필수)

【붙임 1】

프로그램 제작지원 신청서 작성 기준

1. 공통 사항

- 가. 신청서 전체 한글파일 및 직인스캔파일(신청서 첫장) 제출
나. 총 제작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단, 환급되지 않는 부가세는 포함)

2. 지원신청내용

- ①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기재
- ② 주제 : 나열된 예시 중 해당하는 주제 택일 표기(기타인 경우 별도 작성)
- ③ 지원신청금액 : 총 제작비(부가세 제외)에서 자체제작비를 제외하고 지원 신청 금액을 1백만 원 단위로 기재
- ④ 제작 분량 : 프로그램의 분량, 수, 총 분량 기재
- ⑤ 제작완료일 : 지원기간 내 프로그램 제작 완료일 기재(0000년 00월 00일)
- ⑥ 송출(예정)일 : 송출(예정)일 기재(0000년 00월 00일)

3. 신청인에 관한 사항

- ⑨, ⑩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 첨부 증빙자료 내용과 일치
- ⑪ 대표자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자명 표기
- ⑭ 제작책임자 : 신청인 내부직원으로서 프로그램 제작 및 제작비 집행에 관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작지원금에 대한 증빙자료·회계장부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연출자, 연락담당자, 정산책임자 : 동일인의 경우 '상동'으로 표기
- ⑮ 공동제작 협정국 관련 정보 기재

II. 사업 수행 계획서

I. 2023년도 공동제작협력 제작지원 신청서

1. 지원신청내용

(1) 프로그램명 (한글) (영문)					
(2) 주 제 <input type="checkbox"/> 인물/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자연 <input type="checkbox"/> 음식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예술/음악 <input type="checkbox"/> 생활/과학/지식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드라마 <input type="checkbox"/> 시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3) 제작비 (부가세제외)	구분	제작 지원금 (신청금액)	자체 제작비 (방송사 확보 예산)	해외 제작비 (해외 공동제작사 예산)	합계 (총 제작비)
	금액(백만원)				
	비율(%)				100%

2. 세부신청내용

(4) 제작 분량	분량(분)	편수		총 분량(분)
(5) 제작완료일		(6) 송출(예정)일		

3. 신청인에 관한 사항

(7) 법인명	(8) 채널명				
(9) 사업자등록번호	(10) 법인등록번호				
(11) 대표자 성명	(12) 홈페이지 주소				
(13) 주 소					
(14) 담당자 정보	성명	직위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① 제작책임자					
② 연출자(PD)					
③ 연락담당자					
④ 정산책임자					
(15) 해외 공동제작사	(국가)	(법인명)			
① 주 소					
② 담당자					

- 2023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기 신청과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첨 부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2023년 월 일

기관장 : _____ (법인인감)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 제작 개요 요약 (1페이지 내 작성(분량 준수 요망))

□ 지원신청내용

(1) 프로그램명 (한글) (영문)				
(2) 주 제 <input type="checkbox"/> 인물/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자연 <input type="checkbox"/> 음식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예술/음악 <input type="checkbox"/> 생활/과학/지식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드라마 <input type="checkbox"/> 시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방송사 명		분량, 편수	분	편
제작완료일			송출(예정)일	
제작비 (부가세제외)	구분	제작 지원금 (신청금액)	자체 제작비 (방송사 확보 예산)	해외 제작비 (해외 공동제작사 예산)
	금액(백만원)			
	비율(%)			

□ 제작 개요

기획 의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구성	
기타 참고 사항	

1. 제작개요 (아래 각 소제목 내용을 포함하여 총 20페이지 이내 자율적 기술)

가.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제목
- 제작 규격(분량, 영상, 음향)
- 소재 및 주제
- 유사 소재의 작품 유무(있을 경우 차별점 기술, 없을 경우 표기 하지 않음)
- 시청·청취 타겟

나. 기획의도 및 목표

다.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계획 (10페이지 이내)

라. 홍보·유통·판매 등 활용계획

(마케팅 방안/ 국내외 홍보 및 유통 방안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율적 기술)

마. 기타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

바. 해외 공동제작 사업자 구성원의 주요업무 및 역할

2. 제작일정 (상세히 작성)

기간	제작과정	세부내용

※ 선정 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 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3. 자원 활용계획

※ 아래 자체보유자원의 경우 총 제작비로 불인정

가. 자체 인력 활용계획 (주관사업자 참여인력)

순번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 지원 선정 후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나. 국내 협력 사업자 참여 인력(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순번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 제작책임자, 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다. 해외 공동제작 사업자 참여 인력

순번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 제작책임자, 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라. 기타 외부인력 활용계획

순번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 제작책임자, 연출자는 외부인력 용역 불가

마. 자체 장비 및 시설 활용계획(주관사)

순번	장비·시설	수량

바. 자체 장비 및 시설 활용계획(참여사)

순번	장비·시설	소유자	수량

사. 용역 활용 계획

※ 일반용역비에 집행 예정인 항목별 활용 목적 및 사유 작성 필수

구분	세부내용	활용 목적 및 사유	비고

4.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 경력사항

구 분	제작책임자	연출자	촬영감독	작가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요 제작경력				
수상경력				
유통실적				
기타				

5. 공동제작 추진계획 및 일정

해외 상대국 선정 이유																												
상대국 공동제작사 선정 이유	방송사업자, 제작사 또는 기타 관련 사업자 법적 지위 기재																											
공동제작 추진체계	<pre> graph TD A[책임자 OOO] --> B[OOO팀 OOO(역할) OOO(역할) OOO(역할)] A --> C[OOO팀 OOO(역할) OOO(역할) OOO(역할)] A --> D[OOO팀 OOO(역할) OOO(역할) OOO(역할)] A --> E[OOO팀 OOO(역할) OOO(역할) OOO(역할)] </pre> <p>* 상기 예시와 같이 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도 작성</p>																											
역할분담	<p>< 재정적 기여 비율 >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금(A)</th> <th>국내 자부담(B)</th> <th>해외제작비(C)</th> <th>총제작비 (A+B+C)</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율</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창의적 기여 비율 및 내용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국내 사업자</th> <th>해외 공동제작사</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td> <td></td> <td>100%</td> </tr> <tr> <td>기여 내용</td> <td colspan="3">제작과정 중 해외 공동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금(A)	국내 자부담(B)	해외제작비(C)	총제작비 (A+B+C)	금액					비율					구분	국내 사업자	해외 공동제작사	합계	비율			100%	기여 내용	제작과정 중 해외 공동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		
구분	지원금(A)	국내 자부담(B)	해외제작비(C)	총제작비 (A+B+C)																								
금액																												
비율																												
구분	국내 사업자	해외 공동제작사	합계																									
비율			100%																									
기여 내용	제작과정 중 해외 공동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																											
협력방안	공동제작, 방송송출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 작성																											
송출일정	(국내) (해외)																											
송출경로	(국내) (해외) ※ 송출대상 방송사(채널), 플랫폼 등 작성																											
향후 프로그램 활용계획																												

6. 기타 참고자료

-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한글 양식으로 작성 후 e나라도움 제출

III. 사업자 일반정보

1. 주관 사업자

사업자 구분	방송법에 따른 사업자 법적 지위 기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도		
종사자 수	2022년 12월말 기준 정규직 종사자 수 기재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 연혁	최근 5년 이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주요 공동제작 실적	최근 5년 이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2. 국내 협력 사업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여사 수만큼 작성)

사업자 구분	방송사업자, 제작사 또는 기타 관련 사업자 법적 지위 기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도		
종사자 수	2022년 12월말 기준 정규직 종사자 수 기재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 건전성	재무제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주요 연혁	최근 5년 이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주요 공동제작 실적	최근 5년 이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3. 해외 공동제작 사업자 (참여사 수만큼 작성)

국가명			
사업자 구분	방송사업자, 제작사 또는 기타 관련 사업자 법적 지위 기재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도	
운영채널 현황			
주요 연혁	최근 5년 이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주요 공동제작 실적	최근 5년 이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IV. 제작비 소요내역(엑셀양식)

구 分	비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세부내용	단가	수량	금액
	총계(원)	예) 단가X명X횟수				
	(합계)					
	(소계)					
	o 일반수용비					
	인쇄및유인물					
	소모성물품					
	업무위탁대가 등					
	수수료 등					
	(소계)					
	o 공공요금및제세					
	(소계)					
	o 임차료					
	(소계)					
	o 일반용역비					
1. 운영비	(합계)					
	(소계)					
	o 국내여비					
	(소계)					
	o 국외여비					
	(소계)					
2. 여비	(합계)					
	(소계)					
	o 업무추진비					
	합계					
	총계	() 원				

※ 세부내역에는 단가,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회계감사 비용은 7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

※ 부가가치세를 제외(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한)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 내부인건비 지출 불가 등 총 제작비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미 준수 시 심사
감점처리 및 향후 적발 시 축소지급 또는 반환 예정

※ 지원 대상 선정에 앞서 제작비 사정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붙임 2】

저작권 보유 사실 및 공개 동의서

주관기관명 지원 과제명	제작책임자
-----------------	-------

'2023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신청작에 대한 저작권 보유현황 및 정보를 공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협약의 해약, 향후 본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저작권 보유현황

구분	저작권 보유율	비고
사업자명1	100%	
사업자명2	-	
사업자명3	-	
총 합	100%	

※ 저작권 보유율 총합은 100%가 되어야함

□ 제작 개요

컨셉 및 기획의도	※ 작품 전체 컨셉 및 구성 등 ※ 저작권 보유현황 홈페이지 게시 및 이의접수 등 사실여부 확인에 사용되므로 공개 가능한 범위로 작성 3~4줄 정도로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작성
-----------	---

2023.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 3】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신청서 (선금/중도금/잔금 중 택일)

신청인	신청법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신청 대상사업	신청액 (단위:원)	제작지원금액	xxx,xxx,xxx원(x억x천x백만원)(부가세 제외) ex) 321,500,000원(삼억이천일백오십만원) *선금일 경우 20%, 중도금일 경우 50%, 잔금일 경우 30%를 기재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총사업비 (부가세 제외)	구분	금액	비율
		정부지원금	원	
자체제작비		원		
합계	원	100.0%		
신청금 수령계좌	거래은행	(지점명 :)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2023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사업 수행지침 등 부가조건을 수락합니다.

- 불 임 : 1. 제작지원금 관리용 신규개설 통장 사본 1부.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2023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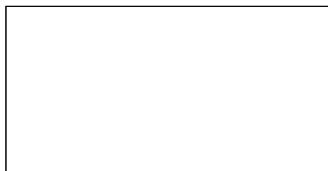
총괄책임자(제작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법인대표) : (법인인감)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불임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위 인감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협약상대자주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사업수행기관의장(법인대표) 성 명 : (인)

2023. . .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지원자 관리
-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개인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 5년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 심사 · 평가참여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사업관리 · 수행 등 실시에 대한 적법성 조사
- 방송진흥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 · 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 심사 · 평가참여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정부부처 및 내/외부 감사 등에 비정기적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내외부 감사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위,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을 시 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 심사 · 평가참여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작 책임자 성명 : (서명)

【붙임 7】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사업 프로그램 제작지원 중간보고서

프로그램명 :

직 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 사업개요(요약)

사업자명							
프로그램 명							
총 제작 분량	분	분	편	제작 진행 분량	분	분	편
제작기간	'23. . ~ . . .		장소별 제작기간	국내('23. . ~ . . .) 국외('23. . ~ . . .)			
총제작비 (부가세 제외)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제작지원금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자체제작비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해외제작비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기획개요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송출계획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일정	사업계획	일정	추진실적	사유

※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 4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

【불임 8】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사업
프로그램 제작지원 결과보고서**

〈 사업 개요 〉

- ◎ 프로그램명 :
- ◎ 지원 분야 :
- ◎ 제작 기간 :
- ◎ 방송 기간 :
- ◎ 제작비 : 원(총 제작비)
- 제작지원금 : 원
- 자체제작비 : 원
- 협정국제작비 : 원

제출일자 : 2023년 월 일

방송사명 :

직 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 사업개요(요약)

사업자명						
프로그램 명						
총 제작 분량	분	편	총 방송 분량	분	편	
제작기간	'23. . ~ . . .		장소별 제작기간	국내('23. . ~ . .)	국외('23. . ~ . .)	
총제작비 (부가세 제외)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제작지원금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자체제작비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해외 제작비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불용사유 ※ 지원금 불용액 발생시 기재						
프로그램 기획개요	(프로그램 내용 요약)					
프로그램 제작 방법	(제작방식, 일정 등)					
성과 요약	(프로그램 방송 효과, 시청률, 수상실적, 판매, 고용창출 등 요약)					
기타 제출자료 목록	(영상파일, 편성표, 편성확인서, 방송 캡쳐, 시청률조사표, 언론보도자료 등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명칭 및 수량)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일정	사업계획	일정	추진실적	변경사유

※ 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 2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

3. 광고·홍보 및 방송 현황

프로.그램 광고·홍보 현황	홍보·광고 채널	홍보·광고 일시
	프로그램 시작전 자막고지	2023-11-10 23:00~23:50
방송현황	방송국 외 현수막	2023-11-10 ~ 12-10
	방송채널	방송일시
	1회	2023-11-10 23:00~23:50
	2회	

※ 광고, 홍보, 방송 캡쳐본 등 관련 사진자료 있을 시 첨부

※ 다른 채널에 판매, 편성 시 타 채널 방송 일시도 기재

4. 고용 현황(방송사 소속 직원 외)

구분	분야	소속	이름	고용기간	
				시작일	마지막일
1	작가	프리랜서/제작사	아아아	2023-04-01	2023-08-12
2					
3					
4					
5					
6					
7					
8					
9					
10					
11					
12					

※ 분야 구분 예시 : 작가, 촬영/장비, 연출/리포터, 후반작업, 기타(행정, 통번역 등)

5. 사업추진성과

■ 언론보도 내용·사진			
일 시	보도처	주요내용	관련사진
■ 국내·외 수상실적			
일 시	수상명		
■ 국내·외 판매실적			
판매시기	판매처(국가)	판매금액	

■ 시청률		
조사기관	조사기간	시청률
■ 기타 정성적 성과		

6. 사업 자체 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수행 결과 잘한(된) 점
■ 사업수행 결과 잘못한(된) 점
■ 사업수행이 방송사에 도움이 된점
■ 사업수행 애로사항 및 문제점, 건의사항 등

【붙임 9】

수행계획 변경표

프로그램 명			
방송사 명			
수행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행내용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3. **. **.
총괄(연구)책임자 : *** (인)